

한번에 끝내는 알기 쉬운 DDA 협상 용어 50선

농림부 농업협상과

(협상 전반)

1. DDA 협상

- 중동 지역에 있는 ‘카타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도하(Doha)’인데 2001년 11월 전세계 장관들이 ‘도하’에 모여서 무역자유화협상을 하기로 하고 그 이름을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도하개발의제’인데 협상에서 개도국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 주요4개국 (G4, Group of Four)

- DDA 협상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특히 미국, EU, 인도, 브라질을 ‘주요4개국’이라고 합니다. 주요4개국이 종종 모여서 협상 일정, 주요쟁점에 대해 협의하고 사전조율을 하기도 하는데,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DDA 협상 진전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3. G10

- G10은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농산물 순수입국 모임인데 농산물 관세를 지나치게 많이 감축하는데 반대하는 그룹입니다.

4. G33

- G33은 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필리핀 등 개도국 특별품목(Special products)을 옹호하는 나라들의 모임인데, 개도국 특별품목 개수를 충분하게 많이 인정하고 관세감축을 적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G20

- G20는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등 개도국 그룹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미국, EU 등 선진국을 견제하는 개도국 그룹이라고 보면 됩니다.
- G10, G33, G20 등은 당초 각각 10개국, 33개국, 20개국에서 출발하였으나 지금은 모임에 참가하는 나라의 수와 상관없이 고유명사처럼 쓰입니다.

6. 소규모취약국가(SVE, Small and Vulnerable Economies)

- 소규모취약국가는 DDA 협상에서 관세와 보조금을 덜 깎게 봐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봐줄지에 대해서 협상을 해야 합니다.

7. 신규가입국(RAM, Recently Acceded Members)

- WTO에 새로 가입한 나라들은 가입과정에서 관세와 보조금을 많이 깎았기 때문에 DDA 협상에서 관세와 보조금 감축을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축폭은 협상중에 있습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신규가입국으로 분류할 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으나 도 하개발아젠다 협상이 출범한 2001년 11월이 기준시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8. 최빈개도국(LDC, Least Developed Countries)

- 국제연합(UN)이 지정한 가장 가난한 나라들로 2007년 7월 현재 50개국이 최빈개도국입니다. DDA 협상에서 최빈개도국들에게 우대를 주기로 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최빈개도국들이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수량을 제한하지 말고 관세도 부과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9. 비농산물협상(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 DDA 협상에서는 농산물 뿐만 아니라 농업이외의 물품 즉, 공산품에 대해서도 협상을 합니다. 농업협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반영하여 농산물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비농산물협상’이라고 합니다.

10. 세부원칙(Modalities), 이행계획서(Schedule)

- 세부원칙은 관세와 보조금을 감축하는 폭, 감축기간 등 구체수치를 담은 문서인데 세부원칙이 타결되면 각국별로 세부원칙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적은 문서 즉, 이행계획서(Schedule)를 WTO에 제출합니다. 이행계획서가 세부원칙에 따라 잘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WTO 회원국들이 검증을 하고 검증이 끝나면 DDA 협상이 종결됩니다.

11. 합의가 가능한 예상 범위(Landing zone)

- 협상을 오래하다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협상이 타결될 경우를 가정할 때) 협상 타결 예상 수치가 감이 잡힙니다. 물론 그 감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 수치를 비행기가 착륙하는 지점에 비유해서 landing zone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2. 다자(차원의)프로세스(multilateral process)

- 2007년 7월 현재 WTO 회원국은 151개국인데 실제 DDA 협상에 모든 나라가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며, 주요 몇몇 회원국끼리 비공식적인 협상과 의견조율을 많이 추진합니다. 공식적인 협상과 비공식적인 막후 협상이 균형있게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 질 때 협상에 진전이 생기곤 합니다. 다자프로세스는 비공식적인 막후 협상보다는 WTO 회원국 전체가 참여 할 수 있는 비교적 공개적인 협상을 말합니다.

13.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게 부여한 무역협상권한을 말합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무역협상권한은 원래 의회에 있습니다. 무역증진권한을 행정부에게 주었기 때문에 미 의회는 협상 결과를 멋대로 고칠 수 없고 찬반 여부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시행정부의 무역촉진권한은 2007년 6월말로 종료되었으며, 무역촉진권한이 개신될지의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당시에는 신속협상권(FTA, Fast Track Authority)라고 불리었습니다.

14. DDA 농업협상 3대 분야 (3 pillars: 3가지 기둥)

- 농산물 관세 감축 분야를 시장접근(market access), 농업보조금 감축과 제한을 국내보조(domestic support), 농산물 수출보조금 감축과 식량원조 제한, 농산물 수출을 위한 금융지

원 제한을 수출경쟁(export competition)이라고 합니다.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이 농업협상의 3대 분야입니다.

15. 이행기간 (Implementation period)

- 관세와 보조금을 감축할 때 일정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맞추어 감축합니다. 그시간을 통상 이행기간이라고 합니다.

16. 개도국 우대(S&D,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 DDA 협상에서 개도국은 선진국에 비해 관세와 보조금 감축폭이 작고 이행기간도 길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개도국은 관세와 보조금 감축폭이 선진국이 2/3 수준이었고 이행기간도 개도국은 10년 선진국은 6년이었습니다. 물론 최종 협상 결과에 따라 개도국별로 실제 감축폭과 이행기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장접근)

17. 구간경계(Threshold)

- DDA 농업협상에서는 관세가 높을수록 관세를 더 많이 깎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가 100%p인 관세는 관세감축률이 70%이고 50%p인 관세는 60%를 감축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100%p인 관세는 관세감축후 30%p가 되고 50%p인 관세는 20%p가 됩니다. 이렇게 높은 관세에 높은 감축률을 적용하려면 구간(band, tier)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간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관세수치를 구간경계(threshold)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논의결과 구간(band) 수는 4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8. (관세)감축률 (Reduction rate)

- 관세를 감축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0%p에 관세감축률이 50%를 적용하면 감축 후 관세는 100%p가 됩니다. 극단적인 경우로 관세감축률이 100%이면 모든 관세는 감축 후에는 0%p가 됩니다.

19. 최상위구간(top band)

- 가장 높은 관세감축률을 적용받는 고관세 구간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75%p를 넘는 관세는 최상위구간에 속할 것으로 보이고 70%정도 관세감축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 세번(tariff line)

- 관세를 부과하는 기본단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경우 쌀이라는 한가지 품목에는 16개 정도의 세번이 있습니다.

21. 관세상한(Tariff capping)

- 관세상한은 일정한 수준을 넘는 관세는 무조건 일정한 수준으로 끌어 내리자는 개념으로 미국은 관세상한 75%p, EU와 G20는 관세상한 100%p를 제안하였고 G10과 여타 일부 주요국들만 관세상한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2.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

- 민감품목은 관세감축을 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가로 수입쿼터(TRQ)를 주어야 합니다. 민감품목의 개수는 국별로 전체 세번(tariff lines)의 5% 내외에서 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감품목의 경우 즉 관세를 얼마나 적게 감축하고 TRQ를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는 DDA 협상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23. 무(관)세

- 관세가 없는 즉 관세가 0%p인 경우를 말합니다. 통상 관세가 있는 세번은 ‘관세부과가 가능한 세번’ (dutiable tariff line)이라고 합니다.

24. 이탈(deviation)

- 민감품목은 여타 일반품목에 비해 관세감축을 덜 할 수 있는데, 얼마나 덜 감축하는 것을 허용하느냐를 ‘이탈’이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100%p 관세가 있고 일반 관세감축률이 50%라고 하면 감축후에는 50%p가 됩니다. 그런데 이탈을 50% 허용한다고 하면 일반관세감축

률 50%의 50% 이탈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25%만 감축하게 됩니다. 이 경우 100%p 관세는 75%p가 됩니다. 현재 민감품목에게 이탈을 많이 허용하려는 수입국들과 이탈을 가급적 제한하려는 수출국들간 입장차가 큽니다.

25. 수입쿼타(TRQ, Tariff Rate Quota)

- 수입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정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그 물량을 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콩에 대해 100톤까지는 5%p의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100톤이 넘는 물량은 120%p의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경우 5%p의 관세를 쿠타내관세(in-quota tariff)라고 하고 120%p의 관세를 쿠타밖관세(out-quota tariff)라고 합니다.

26. 특별품목(Special Products)

- 개도국들은 식량안보(food security), 생계유지(livelihood security), 농촌개발의 필요(rural development needs)를 감안하여 특별품목(Special Products)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 품목 개수와 대우에 대해서는 이를 최대한 제한하려는 선진국, 농산물수출개도국들과 이를 가능한 확대하려는 농산물 수입개도국간 입장차가 매우 큽니다.

- 다음호에 이어서 -

